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I 주요 방침

'27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주요 변동사항 요약(병무청 고시 제2026-02호)

- ① **중점정책육성분야 확대** : (기존)저탄소산업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 (추가)국가첨단전략분야(로봇/방산)
 - ② **우대사항 추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 우대 가점 추가(우대가점 3점)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보훈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25. 11월 기준)
- ※ 상기 ①, ②와 관련하여, 신규지정 업체 평가지표 총점(120점) 변동은 無

□ 2027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3,200명(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농어업 270명)
-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 별도 제한없음(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 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간주

* 보충역은 인원배정 신청 불요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인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은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인원배정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선정 이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래의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 일반고(직업계열학과) 등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자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마이스터고 ·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2		○ 특성화고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 협약자 - 지자체 · 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2-1	2008년 출생자	○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6년도 졸업 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3	2008.12.31. 이전 출생자	○ '1~2-1순위' 이외의 사람(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세부 내용		
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 → 학교정보 → 특성화고 → 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참여자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만 인정 ④ 일반고(직업계열학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⑤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⑥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7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⑦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7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⑧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대학 학력자는 제외)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주말·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편입가능 ⑨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 되어야만 편입 가능 ⑩ 마이스터고 유형의 경우 학교-기업 간 2자 협약을 체결하므로 [서식 8] 제출을 통해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가 채용(예정)임을 확인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체결한 산학협약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⑪ '08년 출생자('2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8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6년 졸업 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업종별 자격 요건 :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붙임 3, 4 참고

- **공업분야업** : 제조 및 정보처리분야(※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정보처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필요)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 ④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 협약 대상자가 근무중(졸업자)이거나, 채용예정(졸업예정자)인 경우 인정
↳ 협약 대상자란, 졸업자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중에 취업협약(3자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졸업 후 신청기업(협약업체)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인 경우만 인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④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⑤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업종(사업)이란, 여러 업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업종(사업)의 매출보다 많아야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자문, 개발, 공급에 속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제조분야 중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 음료, 동물약품, 동물사료, 농·임·수산물가공, 영상 게임기·게임 S/W·애니메이션 제작” 업종은 소관부처 접수 요망

* 타 소관부처에 신청한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업

-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2027년도 현역 필요인원 배정신청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동시에 '27년도 현역 인원배정도 신청가능
- '08.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0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 우선배정은 신청 당시 해당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
- 중점정책육성분야는 업체별 최대 3명 이내, 최대 500명 배정
 - “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 신규 지정업체 신청기업은 상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해당하며, 가점을 희망 할 경우, 「**별첨자료**」(15p)의 **분야별 협단체**를 통해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함(**발급까지 15여일 소요, 공고이후 신속히 접수 요망**)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붙임2] 참조

< (아래) 정보처리분야 현역병 입영대상자 요건 >

- ①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 ②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④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신규신청 제외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 요청(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누리집 확인)
-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에 해당하는 업체(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별표 1])

□ 신규 신청업체 제출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 참조

① 신청요건 확인서류(업종별 모든 서류 필수 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조업	정보처리업	광업, 에너지업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 중 [4.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1부	1부	1부
2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부	1부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1부	1부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1부
5	최근 결산년도 1~3개년('23~'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또는 올해 신설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세 신고·납부실적 등 대체(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1부 (1년간)	1부 (3년간)	1부 (1년간)
6	'26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 ※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 제출)	1부		

번호	제출서류	제조업	정보처리업	광업, 에너지업
7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25.12월~'26.5월, 매월) * 귀속월 기준으로 '25.12월~'26.5월까지 6개월분(월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단, '26.5월 신고서가 미발급된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각 1부 * 법인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공장(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주소가 표시될 것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각 1부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각1부	각1부	각1부 (에너지업 제외)
8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9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1부
10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4)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1부	
11	특성화고 : 졸업증명서 또는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5),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협약서 마이스터고 : 마이스터고 산학협약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인 경우만 제출	1부	1부	
12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9)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1부	1부	1부

② 평가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만 제출)

번호	제출서류	인정범위
1	'25년 수출액 증빙서류	. (직수출)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영세율매출명세서" (단,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번호	제출서류	인정범위
2	직업계고 연계 산학협약 관련 서류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 중기부, 지식재산처, 국토부, 방사청 ·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서식3)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 6-1)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의 경우 상기 2개 서류 모두 제출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예: 고2) 또는 2009년생과 협약하고 신청한 경우 불인정)

③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서류

신청유형	제출서류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②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③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서식5)로 같음 (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⑤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서식 7-1)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⑦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졸업자는 해당 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④ 별도 인원배정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분	인정범위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국가중점정책 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기후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확인서(산업부 발급)

Ⅲ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필요인원 신청

- '08.12.31. 이전 태어난 현역 대상자만 신청(보충역은 별도 인원 배정 없이 채용 후 즉시편입 가능. '09년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 우선배정은 신청 당시 해당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국가 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저탄소 산업 인증 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최대 500명 (업체당 최대 3명) 기간산업체와 동일한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인원 배정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인원배정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존업체는 "국가첨단전략 산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되, '26년 10월경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 까지 확인서 구비

- 현역 판정자는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과 연관된 직무 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를 채용해야 함(인원신청 시 자격증 소지 의무사항 아님)

- 정보처리분야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 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붙임2] 참조

< (아래) 정보처리분야 현역병 입영대상자 요건 >

- ①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 ②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④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인원신청 제외대상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조치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제외기간 : 고발업체 3년('24년~'26년 고발된 업체), 경고업체 2년('25년~'26년 경고받은 업체), 주의업체 1년('26년 주의받은 업체)
- '26년에 파산된 업체
- '25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6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25~'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4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25~'2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 '26년에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 '25~'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 '24~'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 '26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26년에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26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에 해당하는 업체(기업부설 연구소법 시행령 [별표 1])

□ 기존지정업체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26.7.10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 참조

①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증빙서류

-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예: 고2) 또는 2009년생과 협약하고 신청한 경우 불인정)

신청유형	제출서류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②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서식3)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③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6-1) ·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로 갈음(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⑤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⑥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로 갈음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⑦ ①~⑦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졸업자는 특성화고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② 별도 인원배정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인정범위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국가중점정책 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확인서(산업부 발급) *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확인서 구비필요

IV 신청 방법 및 평가 절차

□ 신청·접수 기간 : '26. 6. 29.(월) 10:00 ~ 7. 10.(금) 18:00

□ 신청 방법

-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 신청관리(산업기능요원 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시스템 업로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증빙서류 업로드에 용량제한이 있으므로 스캔 시 저해상도, 흑백 설정 권고

☐ 신규업체 평가 및 인원배정 절차

<신규업체 선정>

- 접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제외 업체는 신청반려하고,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서류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붙임1] 참조

- 추천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20개 평가등급(1~20)으로 균등하게 구분하고 탈락 없이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7~8월중)

* 동일점수 경합 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 병무청은 중기부, 산업부 등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업체 통보(9월~10월중)

* 1차 선정결과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게시 및 개별통보

-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부로 '27.1.1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자 신청가능(보충역 포함)

<인원배정>

- 병무청은 신규 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신청한 필요인원에 대해 인원배정 순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업체 통보(12월)

V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붙임 1

'27년도 산업기능요원 업체 평가지표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20점 만점)

평가지표				배점
< 일자리 창출 >				50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50점)				
평가지표		측정요소		배점
일자리 양	고용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또는 증가율 (규모와 비율 중 높은 점수)		10점
	성과 유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1명 가입시 2점, 1명 증가 시마다 2점 추가하여 5명 이상이면 최대 10점)		10점
일자리 질	도약기업 (5점)	우수기업 (10점)	으뜸기업 (15점)	15점
	근로 환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최대15점 (건당 3점)
< 수출 >				10
2. 수출기업 (10점)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 50%이상(10점), 40%이상(9점), 30%이상(8점), 20%이상(7점), 10%이상(6점), 5%이상(4점), 0%초과(2점)				
< 경영 및 기술 혁신 >				28
3. 혁신형 기업 (최대 12점) : 각 4점씩 최대 12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준 확인 기업 포함), 사업전환우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4. R&D 투자기업 (최대 3점) - 기업부설연구소(3점), R&D전담부서(2점)				
5. 전략분야 (최대 10점)				
소재·부품·장비 (최대 6점)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스타트업100(6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4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4점)		저탄소 (최대 2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인증기업 녹색사업인증기업 녹색전문기업 中 1
뿌리산업 (최대 4점)	뿌리기술 전문기업(4점) 뿌리기업(2점)			
5-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산업분야 업체 (3점)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서 발급(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첨단민군산업협회) * 산업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				
<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				15
6-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7점) * 아래 중 하나 해당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지식재산치의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학과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③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교)·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④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업체 * 참여학생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교)·졸업생인 경우				
6-2.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6-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6-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5점)				
7.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 균형성장 >				17
8. 지방기업 (최대 11점) - 수도권(1점), 광역시(2점), 시·군 소재(5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4점 부여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위 점수와 별도로 가점 2점 부여				
9. 우대지원 (최대 3점) : 건당 1점, 최대 3점(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인 경우, 3점 가점 부여)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U턴기업, 명문장수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 G-PASS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보훈부 장관 인증)				
10. 기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사용가능)				
합 계 120점				

□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 (50점)

평가지표					
1.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50점)					
평가지표		측정요소			배점
일자리 양	고용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또는 증가율 (규모와 비율 중 높은 점수)			10점
일자리 질	성과 공유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1명 가입시 2점, 1명 증가 시마다 2점 추가하여 5명 이상이면 최대 10점)			10점
		도약기업 (5점)	우수기업 (10점)	으뜸기업 (15점)	15점
	근로 환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최대 15점 (건당 3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2-49호, '12.6.7)】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환경정보과, 경영정보시스템(과,전공), 경영정보전공, 경영통계학전공, 경찰사이버보안과, 계산통계학과, 계측정보처리전공, 관광멀티미디어(과·전공), 관광컴퓨터정보계열, 광전자정보공학(과·전공·부), 광전자정보통신과, 광정보미디어공학과, 광정보통신과, 교통정보시스템전공, 국방정보통신과, 군산관학특약계열, 그래픽정보디자인전공, 글로벌미디어(과·학과·학부), 기계·산업정보공학부, 기계설계시스템정보과, 기계·정보산업공학부,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기계자동화(계열,공학부), 기계자동화정보계열, 기계정보경영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부), 기술정보시스템전공, 기업컴퓨터처리계열, 나노정보공학전공, 네트워크정보과, 네트워크정보통신(과,전공), 데이터정보전공, 데이터베이스응용(공학)전공, 데이터베이스전공, 데이터정보학과, 도시계획정보과, 디지털경영정보(과·전공), 디지털마케팅(과·전공), 디지털콘텐츠개발(과·전공), 멀티미디어네트워크(과,전공), 멀티인터넷(과·전공), 멀티미디어시스템(과·학과·전공), 모바일정보기술(과,전공), 무역사무자동화과, 문헌정보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사무인터넷(과,전공), 사무자동화(과,학부), 사무자동화개발전공, 사무정보(과·전공·계열), 사무정보관리(과,전공), 사무정보시스템(과,전공), 사무정보자동화과, 사무정보처리(과,전공), 사이버보안학(과·전공), 사이버정보관리(과·전공), 산업시스템경영(학)(과·전공), 산업정보과, 수학(과·전공), 시스템엔지니어, 에너지그리드학(과·전공), 영상정보(과,전공), 영상정보공학부, 영상정보소재연계전공, 영상정보시스템계열, 영상정보전자전공, 영상정보처리과, 영상정보통신공학전공, 영상컨텐츠개발전공, 운영분석학(과·전공), 웹모바일정보(과,전공), 웹응용공학(과,전공), 웹정보공학(과,전공), 웹정보산업과, 웹정보처리(과,전공), 위성정보(과)공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유비쿼터스컴퓨팅학(과·전공), 유비쿼터스IT(학)(과·전공), 응용정보처리과, 의료기기과, 의료전산화(과·전공), 의료IT마케팅학(과·전공), 인터넷경영정보(과·전공), 인터넷미디어(학)(과,전공), 인터넷부동산전공,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인터넷사무자동화(과,전공,계열), 인터넷상거래(과,전공), 인터넷정보(과,계열), 인터넷정보공학(과,전공), 인터넷정보과학과, 인터넷정보관리전공, 인터넷정보기술(과,계열), 인터넷정보미디어(학과,계열), 인터넷정보보안(과·전공), 인터넷정보보안해킹과, 인터넷정보시스템전공과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인터넷정보전자계열, 인터넷정보처리(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전공,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계열, 인터넷정보통신공학(전공), 인터넷정보학(과,부,전공), 인터넷통상(과,전공), 인터넷학과전산화과, 자산관리정보과, 전기전자정보(전공,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산사무과, 전산사무자동화과, 전산사무정보학부, 전산수학콘텐츠학(과,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전산정보(학)(과·부·전공·계열), 전산정보공학과, 전산정보과학과, 전산정보관리학과, 전산정보보호학(과,전공), 전산정보수학(과,부,전공), 전산정보응용통계학부, 전산정보처리(과,부,전공), 전산정보통신(과,계열), 전산정보통신공학부, 전자거래학(과·전공), 전자상거래학(과,전공), 전자정보통신(과,전공,계열), 전자정보통신공학(과,부,군,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전공), 정보경영공학과, 정보경영전공, 정보계열, 정보공학(과,부,전공), 정보과학(과,전공,부,계열), 정보관리(학)(과·전공), 정보및컴퓨터공학부, 정보보호(학)(과,전공),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분석학과, 정보사무자동화과, 정보산업(학)(과·부·전공·계열), 정보산업공학(과,전공), 정보시스템(학)(과,전공,과군), 정보시스템개발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부,전공), 정보운영분석학(과·전공), 정보전자(과,전공,계열), 정보전자공학(과,부,전공,과군), 정보전자통신계열, 정보전자통신공학부, 정보전자통신과, 정보처리(학)(과·전공·계열), 정보처리공학과, 정보처리실무전공, 정보처리응용과, 정보컨텐츠과,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학부, 정보컨텐츠과, 정보통신(학)(과·부·전공·과군), 정보통신공학(과,부,전공,과군,계열), 정보통신네트워크전공, 정보통신시스템(과,전공), 중국비즈니스정보(과·전공), 컴퓨터·인터넷정보과, 컴퓨터과학(과,학과,부,전공), 컴퓨터네트워크(과·전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과, 컴퓨터네트워크·보안전공, 컴퓨터사무자동화계열, 컴퓨터사무정보계열,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컴퓨터시스템(표준)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공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관리전공,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시스템정보공학부, 컴퓨터시스템표준화학부, 컴퓨터·경영학(과·전공), 컴퓨터영상정보과, 컴퓨터영상정보통신학과군, 컴퓨터인터넷(과,전공,계열), 컴퓨터인터넷정보(과,계열,전공), 컴퓨터전공, 컴퓨터전기정보학(과·전공), 컴퓨터정보(과·전공·계열), 컴퓨터정보공학(과·전공·부), 컴퓨터정보과학(과,부), 컴퓨터정보관리(과,전공), 컴퓨터정보기술(과,학부,계열), 컴퓨터정보산업공학부, 컴퓨터정보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정보수리학과, 컴퓨터정보수학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과,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정보전공,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전학(과·전공), 컴퓨터정보제공전공, 컴퓨터정보처리(과,부,계열), 컴퓨터정보처리(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과,학과,학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활용과, 컴퓨터제어시스템(과·전공), 컴퓨터튜닝(과·전공), 컴퓨터프로그래밍(과,학과,전공), 테크노과학부, 티미디어시스템과, 하이테크CAD/CAM(과,전공), 해양정보시스템학전공, 행정사무전산학과, 행정정보관리과, 환경/화공·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화공·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CAD응용시스템전공, CAD정보처리전공, e-비즈니스학(과·전공), e-비즈니스및창업학전공, e-비즈니스정보계열, e-비즈니스IT((학)과,전공), e-비즈니스IT광고정보전공, e-비즈니스IT전자상거래기술전공, e-정보공학과, GIS과, IT계열, IT공학(과·전공·부), IT교육과, IT기반전자공학부, IT기술정보전공, IT디자인계열자율전공, IT-디자인-소방계열, IT마스터학과, IT스페셜리스트(과·전공), IT전자공학과(과,부), IT정보계열, IT콘텐츠전공, IT특약계열, IT학부, OA실무정보과, OA정보시스템전공

붙임 3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접수기관 및 추천권자 현황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등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u>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u>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u>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동물사료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u>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u>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u>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에 너 지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u>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u>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u> 산업통상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 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붙임 4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대상 업종 코드

- 제조업 신규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아래의 업종코드가 포함된 해당 분야로 신청
- 정보처리업 신규업체는 별첨 [서식 4]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를 통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원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
- 업종별 세부설명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2024.7.1. 시행)에 따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광업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단,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제외)	광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단, 광물 중 우라늄, 토륨, 건설용석재, 건설용 쇄석, 소금을 제외하고, 광물탐사활동,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섬유
	13102	모 방적업	섬유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섬유
	13109	기타 방적업	섬유
	13211	면직물 직조업	섬유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섬유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섬유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섬유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섬유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13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섬유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
	13403	날염 가공업	섬유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섬유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섬유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섬유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섬유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섬유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 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섬유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섬유
	14130	한복 제조업	섬유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섬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섬유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섬유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섬유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섬유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섬유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섬유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14491	모자 제조업	섬유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화학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생활용품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생활용품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15211	구두류 제조업	신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17101	펄프 제조업	화학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화학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04	골판지 원지 제조업	화학
	17105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화학
	17106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학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화학
	17211	골판지 제조업	화학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화학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화학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화학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화학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화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화학
	18112	스크린 인쇄업	화학
	18113	오프셋 인쇄업	화학
	18119	기타 인쇄업	화학
	18121	제판 및 조판업	화학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0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	화학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학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화학
	20119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화학
	20121	수소 제조업	화학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화학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화학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화학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화학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화학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화학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학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학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학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학
	20423	화장품 제조업	화학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화학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화학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화학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화학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화학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화학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화학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화학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화학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화학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화학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화학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화학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화학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화학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시멘트·요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시멘트·요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요업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철강
	24112	제강업	철강
	24113	합금철 제조업	철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
	24131	주철관 제조업	철강
	24132	강관 제조업	철강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철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철강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철강
	24312	강 주물 주조업	철강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철강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철강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철강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철강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철강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철강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철강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철강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철강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철강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계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강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철강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철강
	25921	금속 열처리업	철강
	25922	도금업	철강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철강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철강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철강
	25931	날붙이 제조업	철강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철강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철강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철강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철강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강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철강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철강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철강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철강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철강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철강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철강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전자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전자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전자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전기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전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26310	컴퓨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통신기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통신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기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전자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전자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전자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전자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화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단, 식약청 지정의료용구 제 외)	기계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기계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기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계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기계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계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기계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기계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기계
	27309	기타 광학 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기계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전기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전기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전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28202	축전기 제조업	전기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기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전기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기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전기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전기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전기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기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기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기계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기계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기계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기계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기계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기계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계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기계
	29162	승강기 제조업	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기계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기계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기계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계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기계
	29177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기계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기계
	29193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기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계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계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계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기계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기계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계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기계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기계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기계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기계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기계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계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 조업	기계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계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기계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계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기계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기계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기계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기계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기계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기계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기계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기계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기계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계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기계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기계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기계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생활용품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생활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생활용품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생활용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생활용품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생활용품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생활용품
	33933	표구 처리업	생활용품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생활용품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생활용품
	33993	비 및 솔 제조업	생활용품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생활용품

중분류	세세분류 업종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산업기능요원 지정 분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에너지
	35112	수력 발전업	에너지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에너지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35130	전기 판매업	에너지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에너지
출판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처리